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3594

발의연월일 : 2021. 11. 30.

발 의 자:김용판・이종성・정희용

조경태 · 추경호 · 조명희

박덕흠 • 박대수 • 이채익

김예지 · 서일준 · 김기현

박수영 · 김성원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래연습장업자는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알선 등을 행할 경우에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준 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는바, 주의 의무 를 다한 영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 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제5호).

법률 제 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6호 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 |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 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 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 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 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한 때. 다만, 노래연습장업자 한 때 가 제22조제1항제2호 또는 제 6호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 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노 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인 사 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

	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
	을 면제할 수 있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